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60
----------	------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3일 김경 의원외 11명
-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경 의원)

### 1. 제안이유

- 저출생 문제가 점차 심각화됨에 따라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임산부에 대해 예우를 다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임산부에 대한 정의를 내림.(제2조)
- 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주는 혜택을 언급함.(제5조)
- 임산부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2024.4.12.~4.16.) 결과 : 의견없음

### III.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제정안의 개요

- 동 제정안은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제정안은 7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제2조(정의)	제7조(교육 및 홍보)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입장료 등 감면)	부 칙

#### 2 주요사항 검토

##### □ 제정안의 입법배경

- 2021년 OECD 통계 기준 38개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기준 서울시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0.55명<sup>1)</sup>으로 계속해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1)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보도자료), p.11.

- 이러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시의 불편을 최소화 하며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새롭게 기획되어 추진되고 있음.

<서울시 임산부 관련 지원 정책>

연번	사업명	지원금액/서비스	소관실국
1	(국가)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회 100만원	시민건강국
2	(국가)첫만남 이용권	출생시 1회, 200만원	여성가족정책실
3	(국가)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여성가족정책실
4	(국가)아동수당	0~7세까지 월 10만원	여성가족정책실
5	(자체)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지원	모유수유 지원서비스	시민건강국
6	(자체)임산부 교통비 지원	1회 70만원	여성가족정책실
7	(자체)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임산부·맞벌이· 다자녀가정 총 6회 *중위소득150%이하	여성가족정책실
8	(자체)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회 100만원	여성가족정책실
9	(자체)다태아 자녀 안심보험	출생일로부터 2년, 6.8만원	여성가족정책실
10	(자체)서울엄마아빠택시	24개월미만, 1회 10만원	여성가족정책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임산부 등과 관련한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임산부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임산부 관련 사회적 갈등 보도자료>

언론사	보도일시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sup>2)</sup>	2024.0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임산부인데 지하철에서 욕먹었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임산부석에 어떤 아줌마가 앉아있길래 그 앞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아줌마 딸이 있었다. 한참 서 있다 아줌마는 배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어 옆에 딸이 계속 배려가 권리인 줄 안다며 엄마한테 얘기했고 그 아줌마는 충격적 딸에게 ‘그렇다 살다 죽게 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li> <li>● 시장조사전문기업 앰브레인에 따르면 임산부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다가 62.6%, 임산부 배려석이 없다면 먼저 자리를 양보받기 힘들다가 55.9%로 답했다. 반면 임산부 배려석이 여성 전용석이라는 인식을 조정하는 것 같아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li> </ul>
뉴시스 <sup>3)</sup>	2024.0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는 제도로 조기퇴근하는 임산부가 민폐를 끼친다고 주장한 글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졌다.</li> <li>● B씨가 “나는 배가 작게 나와서 일상생활이 전혀 안불편하다”, “임신 후 조기 퇴근해서 삶의 질이 상승했고, 출산 전까지 매일 필라테스하며 여유롭게 친구들 모임을 가졌다” 등의 글을 올렸고,</li> <li>● A씨는 “회사는 몸이 힘들어서 무리인데, 태교 여행도 가고 주말에 외식을 다닌 것인가, 임산부 조기퇴근 때문에 인원 충원은 물 건너갔고, 나머지 팀원들의 업무가 늘어나 스트레스다며, 회사를 관두든 휴가를 쓰든 인원을 충원하게 하고 놀러 다녀라”며 글을 올렸다.</li> <li>●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응이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여자로 살기 피곤하다. 애 안 낳아도 낳아도 욕먹는다.”라고 했고 다른 일각에선 “다른 사람이 피해받든지 말든지 신나서 퇴근하는 임산부는 욕먹어 마땅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li> </ul>

- 따라서 출산의 중요성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임산부

2) 한승곤, 2024.3.22., "그렇게 살다 죽게 둬"…지하철서 악담 들은 임신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403211740284104>

3) 정혜승, 2024.4.16., "임산부 조기퇴근 민폐" vs "누려야 할 권리" 갑론을박,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16\\_0002701744&cID=10201&pID=102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16_0002701744&cID=10201&pID=10200)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동 제정안은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동 제정안에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입장료 등 감면), 안 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와 제7조(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 현재 서울시에서는 임산부를 포함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일반조례로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제정되어 있음. 동 조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 제정안 제5조~제7조의 지원사업을 이 조례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등 (안 제1조~제3조 관련)

- 안 제2조(정의)에서는 동 제정안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대상인 임산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 정의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동 제정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입장료 등 감면 (안 제5조)

- 동 제정안 제5조제1항(입장료 등 감면)은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해 市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시설(부설 주차장 포함)의 입장료·사용료·관람료·주차료의 감면이라는 포괄적인 감면 규정을 담고 있음.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시설(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사용료·관람료·주차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 동 개정안에서 감면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은 市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시설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시설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을 포함해 15곳, 체육시설에 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을 포함해 10곳이 있음(붙임 참조). 다만 市에서 설치·관리하는 관광시설은 특정되지 않아 삭제가 필요해 보임.

- 서울시의 계속적인 초저출산 상황에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태교 차원에서 방문하는 시립 문화·체육 시설의 입장료·사용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금번 조례안에서 입장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실제 입장료 등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당해 시설 이용 조례에서 감면 사항을 규정해야 함.
  - 또한 ‘여성가족정책실’에 ‘유관 부서 및 기관’ 등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해당 시설 및 소관기관과 감면 관련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감면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 아울러 실제 감면 시행 시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22년 서울시 내 임산부 수인 42,620명에 그와 동반한 사람을 포함하여 그 이상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서울시의 수입 또는 위탁기관 수입의 감소가 예상됨. 그러나 동반자 및 이용인원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어 ‘유관부서 및 기관 그리고 예산부서 등’과의 협의나 입장료 등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에 대한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동 제정안 제5조 감면과 관련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과 시민 효능감 그리고 수입 감소에 따른 예산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유관부서, 유관기관 및 예산 부서 등’과의 좀 더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집행부서 의견 : 수정가결

- 동 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서는 제정안의 감면대상이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동반자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각 시설별 동반자 기준이 달라질 경우 시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동반자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 무인주차장이 많은 부설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무인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주차요원이 부재할 경우 주차료를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 및 민원 발생 여지가 있으며,
-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 추계와 예산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감면절차 구축, 부서의견 수렴 및 예산 편성, 각 시설 조례 개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3 종합 의견

- 서울시의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동 제정안은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짐.
- 집행부서에서는 입장료 등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해당 이용시설과의 조속한 협의를 위해 임산부의 그 동반자 인원을 제한·특정하며, 감면시설 중 해당없는 관광시설 및 현장에서 증빙·감면절차상 민원발생 소지가 보이는

부설주차장을 삭제하는 방안으로 수정의견을 내었음.

- 그러나 부서 의견과 관련해 동 제정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임의규정으로서 실제적인 지원 근거보다는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고,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별로 상황에 맞도록 개별조례에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동 제정안의 입법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의 ‘유관부서, 유관기관 및 예산 부서 등’ 등과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 요지

### 1. 수정이유

- 시민들의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한 입장료 등의 감면에 관하여 대상 및 시설을 제한하여 조문을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입장료 등의 감면 대상 시설 중 관광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삭제하고, 감면 대상을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서 “임산부”로 변경함. (안 제5조제1항)

##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불임****서울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 시설****○ 문화시설 : 15개**

연 번	시설유형	근거 조례	운영시설	소관실국 (부서)
1	시립 미술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문화본부 (박물관과)
2			서울특별시립남서울미술관	
3			서울특별시립북서울미술관	
4			서울특별시립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5			SeMA 창고	
6			SeMA 백남준기념관	
7			SeMA 병커	
8			서울특별시립미술아카이브	
9	시립 박물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역사박물관	
10			청계천박물관	
11			서울생활사박물관	
12			한성백제박물관	
13			서울우리소리박물관	
14			서울공예박물관	
15	서울 상상나라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상상나라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체육시설 : 10개

연 번	시설유형	근거 조례	운영시설	소관실국 (부서)
1	시립 체육시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잠실종합운동장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			서울월드컵경기장	
3			서남권돔구장	
4			목동운동장	
5			효창운동장	
6			장충체육관	
7			구의야구공원	
8			신월야구공원	
9			창동문화체육센터	
10			산악문화체험센터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760
------------	------------

제안년월일 : 2024년 4월 23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시민들의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한 입장료 등의 감면에 관하여 대상 및 시설을 제한하여 조문을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입장료 등의 감면 대상 시설 중 관광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삭제하고, 감면 대상을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서 “임산부”로 변경함. (안 제5조제1항)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시설(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문화·체육시설”로,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을 “임산부”로, “입장료·사용료·관람료·주차료”를 “입장료·사용료·관람료”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서 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 관리하는 <u>문화 · 체육 · 관광</u> 시설(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 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u>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u>에 대하여 <u>입장료 · 사용료 · 관람료 · 주차료</u>(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 ----- ----- <u>문화 · 체육시설을</u> <u>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u> <u>· 사용료 · 관람료</u>(이하 “입장료 등”) 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사용료·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

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